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30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임미애·김문수·박용갑

박홍근 • 박지혜 • 조계원

전진숙 · 채현일 · 문금주

최민희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을"을 "등(이하 "유전자 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 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다 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는 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표시) ①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 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 -----등(이하 "유전자변형 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 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 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 만,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00분의 9 이하인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이하 "비의도적혼입식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 품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 러하지 아니하다.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 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 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과 비의도적혼입 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의 도적혼입식품등에는 유전자변 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는 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